

【 6 】 양주시 공공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1.

제출자 : 양주시장

1. 제안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에 따른 시행에 맞추어 (2007.1.1)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준용, 사용료 감면부분의 보완 및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수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함

2. 주요골자

- 가. 공공체육시설 관리 · 운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정의를 신설하였음.
(안 제2조 11호)
- 나. 환경기초시설에 조성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무상 사용허가 할수 있도록 대상과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안 제3조 4항)
-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징수 할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 (안 제10조 5항)
- 라. 공공체육시설 신천축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명을 개정 (제10조관련 “별표”)
- 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신설(안 제11조 1항 4호)
- 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액면제 및 50%감면 대상을 규정 (안 제11조 2항)
- 사.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근거를 신설 (안 제23조 항)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 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에서 건립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고 사용허가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감면)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시 대표와 관내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내 훈련경기로써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제11조(사용료감면)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 제1호 · 제4호~~분~~ 전액 면제하며 제2호 · 제3호의 감면은 50%로 한다.

제23조(위탁관리)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시설 입지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와 운영 방법은 계약방식에 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u>	<u>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u>
제2조(정의) 1. ~ 10. <생 략> 11. < 신 설 >	제2조(정의) 1. ~ 10. (현행과 같음) 11.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환경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절 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에서 건립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 ③ < 생 략 > ④ < 신 설 >	제3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사용허가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① ~ ④ < 생 략 > ⑤ < 신 설 >	제10조 (사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징수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 생 략 > 1. ~ 3. < 생 략 > 4. < 신 설 >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도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 시 대표와 관내 각급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1개월내) 훈련경기로써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는 전액 면제하며 제2호·3호의 감면은 50%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제4호는 전액 면제하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 (위탁관리)</p> <p>① <생략></p> <p>② <신설></p>					<p>제23조 (위탁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시설 입지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와 운영 방법은 계약방식에 의한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시설명</th> <th colspan="6">고덕 배수지 생활체육공원</th> <th colspan="2"></th> </tr> <tr> <th colspan="2"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일반사용</th> <th colspan="2">체육 경기 행사 (전용포함)</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평일</th> <th>공휴일</th> <th>평일</th> <th>공휴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축 구 장 사 용 료 개 정 후</td> <td>주 간</td> <td>30000</td> <td>40,000</td> <td>150,000</td> <td>225,00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야 간</td> <td>40,000</td> <td>60,000</td> <td>225,000</td> <td>337,00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 준</td> <td colspan="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용은 2시간, 체육경기 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 행사)는 4시간으로 하되, 초과 사용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 한다. </td> <td></td> </tr> <tr> <td colspan="10"> <p>* <신설></p> </td> </tr> </tbody> </table>										시설명		고덕 배수지 생활체육공원								구 분		일반사용		체육 경기 행사 (전용포함)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축 구 장 사 용 료 개 정 후	주 간	30000	40,000	150,000	225,000					야 간	40,000	60,000	225,000	337,000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용은 2시간, 체육경기 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 행사)는 4시간으로 하되, 초과 사용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 한다. 									<p>* <신설></p>									
시설명		고덕 배수지 생활체육공원																																																																			
구 분		일반사용		체육 경기 행사 (전용포함)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축 구 장 사 용 료 개 정 후	주 간	30000	40,000	150,000	225,000																																																																
	야 간	40,000	60,000	225,000	337,000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용은 2시간, 체육경기 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 행사)는 4시간으로 하되, 초과 사용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 한다. 																																																																				
<p>* <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시설명</th> <th colspan="6">잔디(인조포함) 축구장</th> <th colspan="2"></th> </tr> <tr> <th colspan="2"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일반사용</th> <th colspan="3">체육 경기 행사 (전용포함)</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평일</th> <th>공휴일</th> <th>평일</th> <th>공휴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축 구 장 사 용 료 개 정 후</td> <td>주 간</td> <td>30000</td> <td>40,000</td> <td>150,000</td> <td>225,000</td> <td></td> <td></td> <td></td> </tr> <tr> <td>야 간</td> <td>40,000</td> <td>60,000</td> <td>225,000</td> <td>337,000</td> <td></td> <td></td> <td></td> </tr> <tr> <td>기 준</td> <td colspan="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용은 2시간, 체육경기 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 행사)는 4시간으로 하되, 초과 사용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 한다. </td> <td></td> </tr> </tbody> </table>										시설명		잔디(인조포함) 축구장								구 분		일반사용			체육 경기 행사 (전용포함)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축 구 장 사 용 료 개 정 후	주 간	30000	40,000	150,000	225,000				야 간	40,000	60,000	225,000	337,000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용은 2시간, 체육경기 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 행사)는 4시간으로 하되, 초과 사용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 한다. 																		
시설명		잔디(인조포함) 축구장																																																																			
구 분		일반사용			체육 경기 행사 (전용포함)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축 구 장 사 용 료 개 정 후	주 간	30000	40,000	150,000	225,000																																																																
	야 간	40,000	60,000	225,000	337,000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용은 2시간, 체육경기 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 행사)는 4시간으로 하되, 초과 사용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 한다. 																																																																				
<p>* 사용료의 10%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추가 징수한다.</p>																																																																					

관계법령 발췌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876호]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신문·잡지·판보·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8.12.28, 2000.1.12, 2000.12.29, 2003.12.30>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7.21 대통령령 제19619호]

현행 규정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본조신설 2003.12.30]

개정 규정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 편역무증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 다만, []
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계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3.12.30]

부칙 <제19330호, 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 2005. 4. 28 조례 제2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게시, 공연, 관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출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8. "군인"이라 함은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9.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10.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 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③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로 간주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 1.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 2.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3.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4.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5.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 6.기타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운동장시설 사용시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 2.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 3.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비치와 제18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며, 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 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1.국가·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 2.시설의 개·보수
- 3.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 1.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2.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3.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 2.술에 만취된 자
- 3.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 4.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3월 ~ 10월	11월 ~ 02월
주 간	06:00 ~ 19:00	06:00 ~ 17:00
야 간	19:00 ~ 23:00	17:00 ~ 23: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일반, 전용사용료로 제9조제1항을 적용하여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사용료는 사용 후 3일이내에 정산납부 하여야 한다.

③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와 입장수입총액의

1할 (프로경기는 1.5할)을 사용료로 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후 3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1.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 2.저소득 모·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3.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제1항 제1호는 전액 면제하며 제2호·제3호의 감면은 50%로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 반환되지 아니한다.

- 1.전용사용, 상업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할 경우
 - 가. 사용일 1일전까지 50% 반환
 - 나. 사용일 7일전까지 80% 반환
 - 다. 사용일 20일전까지 전액 반환
 - 2.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 3.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 ②제1항의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수허가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권) ①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 1.국가·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 2.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 3.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 4.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1.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2.체육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한 때
 - 3.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 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7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매표 및 검인) ①입장권은 체육시설내에서 매표한다.
- ②모든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컴퓨터로 발매하는 관람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면제)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에는 수수료는 면제 한다.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 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 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홍보물부착)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공연·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단위:원)

시설명		고덕배수지체육공원				
구 분		일반사용		체육경기 행사(전용포함)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축구장	주간	30,000	40,000	150,000	225,000	
	야간	40,000	60,000	225,000	337,000	
기준	○ 일반 사용은 2시간, 체육경기 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 행사)는 4시간으로 하되, 초과 사용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 한다.					
시설명		테니스장				
구 분		일반사용		체육경기 행사(전용포함)		비고
		월간	1회	평일	공휴일	
테니스장		20,000	4,000	100,000	150,000	
기준		○ 테니스장은 1면이 기준이고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체육경기 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 행사)는 전체면 4시간으로 하되, 초과 사용시 초과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시설명	생활체육돔구장			
구 분	일반사용		체육경기행사(전용포함)	비고
	월간	1회	평일	공휴일
돔 구 장	10,000	2,000	30,000	45,000
기 준	○ 배드민턴장 및 탁구장은 1면이 기준이고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체육경기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행사)는 전체면 4시간으로 하되, 초과 사용시 초과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공휴일은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한다.

※ 시설사용자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 경우 100분의 50을 증과한다.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영화촬영	주 간	160,000
	야 간	190,000
에드벌룬등에 계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10,000
선전물 - 부착광고물 10미터당 진열, 선전탑 평방미터당	1년간	365,000
	5일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기타 물품대여(판매대여) * 매출금액-원가=판매이익	총판매량	판매이익의 20%